

CAW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회차	정기 1차	일자	2022.03.14 18:30	장소	총학생회실
----	-------	----	------------------	----	-------

0 성원 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0	0	0	0	X	0
의과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계
X	0	0	0	X	8 / 11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 3/10 개강인사 완료.
경영경제대학	- 3/13 신입국원 리크루팅 완료.
/কেক/কেশাদাপ	- 자치공간 개방은 학과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방하되 경경운위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가이드라인은 통일적으로 적용.
	- 3/16 새내기 배움터 예정.
사범대학	- 텀블러 배부사업 진행 완료.
	- 3/24~25 교육학과 보궐선거 예정.
	3/17 단학대회 예정이지만 학년 선거 보궐 선거로 3/24 예정.
사회과학대학	회칙 관련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휴/재학생 권리에 대한 부분 개정 예정.
	단과대 선거 일정은 총학생회 선거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
약학대학	·
예술대학	총학생회 선거일정에 맞춰 단과대 선거 진행 예정.
의과대학	·
인문대학	재선거 진행 중.
자연과학대학	·
	- 3/23 단학대회 예정.
통일공대	- 5개 학과/부의 재선거/보궐선거 3/28~29 진행.
	- 3/27 오프라인 동아리 박람회 예정
동아리연합회	·

2 보고 안건

중앙집행위원회	
	- 졸업준비위원회: 졸업기념품 공장 현지사정으로 지연되어 받는대로 배부할 예정.
기위이이됨	- 인권복지위원회: 의혈지킴이 진행 중.
산하위원회	- 문화위원회: 축제기획단 모집 진행 중.
	- 장애인권위원회: 새내기를 위한 장애인권 책자 이벤트 진행 완료.
기타	

3 논의 안건

1. 2021-2학기 예산자치제 회계 감사

1-1. 2021-2학기 예산자치제 지원 단체 회계감사 - 아마농구 청룡

- 추가 요청자료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고, 특이사항 없음.

1-2. 2021-2학기 예산자치제 지원 단체 회계감사 - 매치포인트

- 지출 내역과 결산서 내 금액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하여 차주에 재논의

1-3. 2021-2학기 예산자치제 지원 단체 회계감사 - 마케팅연구회

- 결산서 내 수량에 대한 오류가 있어 해당 부분 수정 요청하여 차주에 재논의
- 예산자치제 지원금 입금 전 지출 건에 대해 확인 필요

2. 중앙감사위원회 발의 2022-1학기 정기감사 취소 관련 논의

- 발의한 내용에 대해 중앙감사위원회의 현 상황과 지난 확운위 결과를 존중하여 발의한 내용에 대해 동의
- 중앙감사위원회 차원의 이번 정기 감사 취소 공지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2022-1학기 학생대표자회의 방식 관련 논의

- 통일공대: 오프라인 회의의 경우, 현재 방역수칙 상 한 자리씩 건너 앉아야 하지만, 전학대회 참여인원이 약 400명, 확운위 참여인원이 약 120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전학대회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불가함. 온라인 회의의 경우, 지난 경험을 통해 전학대회가 불가하여 확운위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오프라인 확운위가 현실적으로 최적의 방식이라고 생각함.
- 사회과학대학: 확대운영위원회가 일상화 된 것 같아 확대운영위원회보다는 전제학생대표자회의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의 단운위 의견.
- 인문대학: 온라인 전학대회 진행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오프라인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확대운영위 원회가 적합하다는 의견.
- 102관 3층 대강당 120명 정도 규모로 수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오프라인 확대운영회는 진행할 수 있음.

4. 회칙 개정 관련 논의

〈총학생회칙 개정〉

- 사회과학대학: 산하위원회 명칭 및 위계에 관한 논의 필요, 산하위원회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16조 3항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와 같은 축약형 단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졸업준비위원회존폐를 마무리 짓자는 의견, 중앙집행위원회과 산하위원회에 대한 역할 분배를 확실하게 구분 짓자는 의견, 회칙에 무엇이 산하위원회인지 명시를 하자는 의견, 학생끼리 연서명을 모아 안건이 상정된 경우에는 안건발의자가 참석하여야 한다는 의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국/위원장단의 발언권을 평등하게 주어야한다는 의견,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작성하여 공개하자는 의견. 55조 3항 사문화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각 산하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 부칙 제4조 중앙감사위원회 관련하여 부칙은 기구를 다루는 부분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장으로 올려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탄핵 소추 → 탄핵 발의로 수정하자는 의견.
- 통일공대: 산하위원회 규정에 대해 55조에서 총학생회장 > 총학생회로 수정. 59조 모든 동아리 > 모든 중앙 동아리로 수정,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내용에서 16장 비상대책위원회 > 중앙비상대책위원회로 수정, 16장 74조 30조, 79조 1항 투표관리위원회 관련 내용에서 '제'를 붙여서 수정할 것.

- 간호대학: 간호대학의 경우에도 반대표제 신설로 제24조 구성에서 학부제에 관한 내용을 경영학부와 동일하게 해석할 것. 추후 확대운영위원회 구성원 결정 시 이를 반영하여 의결진행 예정

〈선거시행세칙 개정〉

- 사회과학대학: 휴학생이 투표를 원할 경우,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달라는 의견, 출마 학년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일부 단위가 있었음, 경고와 같이 주의나 시정명령에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달라는 의견, 선관위원회 규정과 별개로 일반 학우분들이 선거 관리에 투명성을 위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음.
- 통일공대: 확대운영위원회 시기가 선거 기간 중인만큼 이번에는 선거시행세칙은 개정하지 말자는 의견.

〈반성폭력회칙 개정〉

- 사회과학대학: 성폭력의 개념 5조를 보면 항 분리가 잘 안되어 있음, 동의하지 않는 성적 터치에 대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명시해달라는 의견, 3조에서 2항을 합쳐달라는 의견, 대책위원회에서 양측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피해자의 대리자 선임에 대한 선택을 보장해달라는 의견, 대책위원회 구성에 중앙단위 위원회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대표자가 사건 가해자일 경우에 위계를 이용하여 판단이 치우치게 되면 안된다는 의견임.
- 사범대학: 제12조 공개 사과문 부착 및 게시에 대해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면 좋겠다는 의견.
- 통일공대: 민감한 부분인 만큼 세부적인 내용까지 많이 바꾸기에는 추가적인 갈등이 예상됨. 제7조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는 삭제, 제10조 4항 총학생회 성평위 > 총학생회로 수정.

5. 향후 중앙감사위원회 체제 및 회칙 개정 관련 논의

- 사회과학대학: 중감위의 주목적이 무엇인지부터 확립될 필요가 있음. 중앙운영위원회가 중감위원장의 탄핵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교지편집위원회는 동일하게 피감사기구인데 왜 탄핵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 중감위원을 둘 수 없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 각 학과/부의 특색을 무시하고 통일된 기준으로 감사함으로써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임.
- 통일공대: 중감위 체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나 전학대회, 단학대회에서의 회계내역 공개로 자체적인 회계감사 능력을 가지고 있음. 체제 개편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지속적 인 해결책 모색에도 방법이 없다면 폐지도 고려해야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함. 폐지 후 기존 중감위의 역할을 각 단위 회계 관련 직책자들이 서로 검토하면서 소통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경영경제대학: 중앙감사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단운위 내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현 실정을 봤을 때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동의함. 하지만 중앙감사위원회의 초기 설립 목적이 일반학우들이 각 단위 회계에 대해 감사함으로써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점임을 고려하면 폐지 이후에도 일반 학우분들이 각단위 회계에 감사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 차주 회의에서 중감위원장과 함께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여 중감위 개편 방안에 대해 모색하도록 함.

6.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총학생회 재선거 일정 관련 논의

- 첨부1과 같이 재선거 일정을 합의함.

7.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총학생회 재선거 방식 관련 논의

- 서울캠퍼스 대면 수업 비중은 50% 보다 낮기 때문에 온라인 선거로 가져가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
- 후보자 추천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합의함.
- 후보자 추천방식은 글로사인이 배리어프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기존에 진행하던 글로사인이 아닌 구글폼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함. 구글폼으로 진행하여도 추천인 확인에 무리가 없다면 구글폼으로 진행.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총학생회 재선거 추천인 명부 확인은 선본이 요청할 시 1일 1회 진행

8. 총학생회 재선거 유권자 범위 설정 관련 논의

- 작년 선거의 경우, 해외교환학생/ 산학협력인턴자는 추가 유권자로 포함하였고 유학생은 기본 유권자로 포함하였음.
- 유권자 범위 설정과 별개로 유학생을 위한 선거 자료 번역의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공감함.

9. 학생회비 개별 납부자의 학생회비 처리에 대한 논의

- 학생회비 개별납부자 중 소속 확인이 불가한 자의 학생회비는 총학생회 학생회비로 하는 것에 합의함.

4 의결 안건

1. 2021-2학기 예산자치제 지원 단체 '아마농구 청룡' 예산자치제 회계감사를 완료한다 에 대한 의결

재적단위	찬성	반대	기권	결과
8	8	0	0	가결

- 2. 2021-2학기 예산자치제 지원 단체 '매치포인트' 예산자치제 회계감사 관련 의결
- 추가 자료 요청 후 차기 회의에서 재의결
- 3. 2021-2학기 예산자치제 지원 단체 '마케팅연구회' 예산자치제 회계감사 관련 의결
- 추가 자료 요청 후 차기 회의에서 재의결
- 4. 중앙감사위원회에서 발의한 2022-1학기 정기감사 취소에 대해 동의한다 에 대한 의결

재적단위	찬성	반대	기권	결과
8	8	0	0	가결

5. 2022-1학기 학생대표자회의를 오프라인 확대운영위원회로 결정한다에 대한 의결

재적단위	찬성	반대	기권	결과
8	8	0	0	가결

6.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총학생회 재선거 일정을 [첨부1]과 같이 한다 에 대한 의결

재적단위	찬성	반대	기권	결과
8	8	0	0	가결

7.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총학생회 재선거 추천인 명부 확인은 선본이 요청할 시 1일 1회로 한다 에 대한 의결

재적단위	찬성	반대	기권	결과
8	0	0	0	가결

8. 해외 교환학생을 선거시행세칙 제30조 나항의 졸업예정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에 대한 의결

재적단위	찬성	반대	기권	결과
8	2	2	4	부결

9. 산학협력인턴자를 선거시행세칙 제30조 나항의 졸업예정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에 대한 의결

재적단위	찬성	반대	기권	결과
8	1	2	5	부결

10. 유학생을 선거시행세칙 제30조 나항의 졸업예정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에 대한 의결

재적단위	찬성	반대	기권	결과
8	0	2	6	부결

11. 학생회비 개별납부자 중 소속 확인이 불가한 자의 학생회비는 총학생회 학생회비로 한다 에 대한 의결

재적단위	찬성	반대	기권	결과
8	8	0	0	가결

12. 홍보소통국장 이현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인준한다 에 대한 의결

재적단위	찬성	반대	기권	결과
8	8	0	0	가결

13. 회계사무국장 임화현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인준한다 에 대한 의결

재적단위	찬성	반대	기권	결과
8	8	0	0	가결

14. 의혈지킴이 및 봄 축제 관련 비품 구매를 총학생회비로 집행한다 에 대한 의결

재적단위	찬성	반대	기권	결과
8	8	0	0	가결

5 기타 안건

1. 총학생회 재선거 일정과 동일한 단위

- 사회과학대학 단과대 선거, 예술대학 단과대 선거, 경영경제대학 국제물류학과 선거, 간호대 B, D반 선거를 총학생회 재선거와 함께 진행함

CALL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첨부1]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총학생회 재선거 일정 공고

선거일정공고	2022년 3월 15일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25조(선거일정)에 의거	
공직사퇴 마감	3월 18일(18:00까지)	*중앙선관위와 학생회 집행부(국) 및 대표자 중 선거 운동을 하려는 자는 추천 시작 사흘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34조 가항에 의거) *사퇴하려는 자는 사퇴사유서 등 중앙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34조 라항에 의거)	
후보추천서 등록 및 수령	3월 21일 ~ 3월 22일 등록 및 수령 가능 시간 10:00 ~ 18:00	*후보추천은 2022-1학기 대면 학사이지만, 비대면 수업이 많은 관계로 온라인 서명을 통해 진행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제공받은 링크를 통한 서명만을 인정한다. *온라인 서명 서식 제작을 위해 별도 후보추천서 등록 기간을 둔다. *후보추천서 등록용 제출 서류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식과 분량은 제한하지 않는다. - 예비후보의 소속 단과대학 및 학과(부)명, 학번, 이름, 약력, 사진 ex) 공과대학 도시시스템공학과 20170000 배성호	
후보추천 기간	추천서 링크 수령 이후 ~ 3월 28일 (18:00까지)	*본 회원(재학생)으로서 4차 학기 이상을 등록하였으며, 본 회원으로부터 4개 단과대 이상 총 5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지(단, 4개 단과대 별도로 각각 50명 이상을 받아야 하며, 선본별로 복수 추천이 가능)(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31조에 의거)	
후보자등록 마감	3월 28일 18:00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구비하여 를 미팅 30분 전까지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각 1부 2) 대표참관인, 선본원 명단과 재학 증명서(선본원은 재적 증명서 가능) 3) 출마 소견서, 후보 약력 소개서 4) 후보자사진(파일 형태 온라인 제출) 5) 선거공탁금 50만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32조에 의거) *입후보하려는 자는 를미팅 이전에 반드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확인증을 인권센터로부터 발급받아 총학생회 선거관리우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 학생회칙 완본 제6조에 의거) *31조 다항에 의한 후보추천서는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므로 제출하지 아니한다.	
후보자 룰 미팅	3월 28일(19:00~)	*중앙선관위는 등록마감 후 선거시행세칙 31조에 의거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 이에 어긋날 경우에는 등부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입후보자가 32조 가항의 구비서류를 등록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선거시행세칙 33조에 의거)	
선거운동 기간	3월 30일 ~ 4월 11일 (24:00까지) [4월 8일: 합동 유세 및 합동 공청회]	*를 미팅 이후 선거운동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선거운동 준비기간으로 지정한다.(단, 선거운동준비가 사전에 이투라도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시행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중앙선관위가 정한다.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의 따라 경고 조치한다. 단, 후보자 추천, 설문조사, 후보자 추대 모임 등은 사전 선거 운동으로 규제하지 않는다.(총학·거시행세칙 26조 나항, 29조에 의거) *합동유세는 중앙선관위가 정한 날짜에 따른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38조에 의거) *합동 공청회는 중앙선관위의 책임 하에 시행된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39조에 의거)	
투표 기간	4월 12일 ~ 4월 13일 (연장투표 : 4월 14일)	*선거일은 중앙운영위에서 결정한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25조 나항에 의거) *투표소에서는 투표행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52조 나항에 의거) *전체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중앙선관위와 선본의 합의 하에 1일에 한하여 연장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연장 투표시,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중앙선관위의 논의결정으로 재선거 여부를 결정한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58조에 의거)	
당선 공고	개표 직후	*개표는 연장투표가 실시될 경우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당선공고에 관련한 이의 신청을 받고 의신청이 없을 경우 동의를 얻어 당선공고를 한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62조에 의거)	
이의제기 기간	당선공고 시점 ~ 24시간	*당선공고 이후 24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62조 나항에 의거)	
당선확정 공고	당선공고 24시간 후	*24시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당선확정공고를 한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62조 마항에 의거)	